

제 536 호

1976.1.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레

◎ 조 례

- 제 1005 호 :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3
- 제 1006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007 호 : 군장성소유자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 특별
조례중 개정조례..... 4
- 제 1008 호 : 서울특별시지붕개량에 수반한 취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5
- 제 1009 호 :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5
- 제 1010 호 : 서울특별시 먹는피임약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개정조례..... 5
- 제 1011 호 : 서울특별시의국인관광객에대한유흥음식세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 규 칙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546 호 : 수도권행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3
제 1547 호 : 서울특별시시세 부과징수규칙증개정규칙.....	7
제 1548 호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 운영규칙증개정규칙.....	10
제 1549 호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16

◎ 고 시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9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20
제 3 호 : 1976 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20
제 4 호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 지적승인.....	21
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	24

◎ 공 고

제 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	24
제 1 호 : (중구공고) 공인개작공고	25
제 1 호 : (은명출장소공고) 공인개작공고	25

◎ 사 정

◎ 정 정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하점생 **인**

1976년 1월 10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05 호

서울특별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이하 "선발 수수료" 라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징수한도액) 선발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징수방법) ①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구	분	징수한도액
사립국민학교		300 원
유치원		30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수도자문위원회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06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제 5 호내지제 14 호" 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 15 호부터 제 20 호 까지를 삭제한다.

- 5. 시민복지분과 위원회
- 6. 유통체제개선분과 위원회
- 7. 교통분과 위원회
- 8. 관광분과 위원회
- 9. 환경분과 위원회

- 10. 상수도분과 위원회
- 11. 지하철 운영분과 위원회
- 12. 민방위분과 위원회
- 13. 녹지분과 위원회
- 14. 문화공보분과 위원회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5 인 이상 30 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8 인 이상 10 인 이하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07 호

군장성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군장성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중 "군장성" 다음에 "급" 을 삽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개량에 수반한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08 호

서울특별시지봉개탕애수반한취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봉개탕애 수반한 취
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009 호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대한
유흥음식세 과세면제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 1010 호

서울특별시먹는피임약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먹는 피임약 보급 수
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21정입 또는 28정입 1사이클)
 의 수수료는 이를 5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
 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11호

서울특별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 과세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
 음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에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에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46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중 제 2 항, 제 6 항, 제 8 항, 제
 9 항 및 제 11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2 항을 삭제한다.

(2) 민방위 국장은 민방위 분과
 위원회를 주관한다.

(6) 보건의사회국장은 다음과 분과 위
 원회를 주관한다.

<p>1. 보건분과위원회 2. 시민복지분과위원회 ⑧산업국장은 유통경제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⑨건설국장은 건설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⑩지하철본부장은 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p> <p>제 4 조 표제 "비상계획분과위원회"를 "민방위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 1항제 5호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민방위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5. 소방행정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p> <p>②간사는 민방위과장 서기는 관리재장이 된다.</p> <p>제 10 조 표제 "사회복지분과위원회"를 "시민복지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시민복지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6. 부녀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향상에 관한 사항</p> <p>제 11 조 제 14 조 및 제 15 조를 삭제한다.</p>	<p>제 18 조 표제 "지하철건설분과위원회"를 "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로 하고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 1항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지하철운영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4. 지하철의 능률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p> <p>제 19 조 제 21 조 및 제 22 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6년 1월 14일</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47 호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65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지제 65호> 압류 기록 대장 압류조서 (전면)											
채 납 자	주소또는 거 소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절 제			
	성 명							년 월 일 본건압류및압 류통지합니다.			
압 류 건 물 표 시	물건소재지 또는보관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과 장			
	부동산, 차량										
	동 산 가 타							제 장			
압류등록등기 보관년월	등기축탁또는 보관이양 년월일	년 월 일		등기등록 년월일	년월일		계				
압 류 에 관 련 된 채 납	채 납 액 명 세						납 부 확 인 사 항				
	채무 년도	책호 기분	액 액	가산금	채 납 처분비	계	납부또는 경락일자	납부은행	조사자 성 명	적 요	
압 류 이 후 채 납											
재산압류 통 지	년 월 일				우편번호						

해 제 조 서 <이 면>

해제 사유	원년의 경우 종납부세	해제년월일	계	관리과합의	계 장	과 장	결 계
		년 월 일 우편번호					년 월 일 본건해제 및 해제통지함부
제납차분비	처분비용계	우 편 로	인 루 입	공 교 로	기 타		
징수결의	원						

식인번호	년	번
	도	

공매공고통지발부내역

회 수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비 고
일 자								

공매공고내역

구 분	회 수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비 고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계 시 판 자 시 공 고								
신문공고시 신문명 및 년 월 일								
공 고 로								
전 력 가 격 재 감 후 결 정 액								

※ 압류조서, 압류등기(등록)추락서, 압류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
등기(등록)추락서, 압류해제통지서 등이 원안 비치는 본 기록대장
기록으로 가름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1548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
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시공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 제 1 항 중 "현장 대리인 등 종업원"을 "현장대리인 및 배판공(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공업자가 전항에 의한 종업원을 두고자 할 때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종업원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종업원 신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종업원 신분증을 발급하고 동일 시공구역 해당 구청장에게 3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동 신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4 조 중 "현장대리인" 등을 삭제한다.

제 25 조 중 "별표 제 8 호 서식"을 "별표 제 2 호"로 한다.

제 3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4 조 (권한위임) 이 규칙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시공업자의 영업소제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 3 조, 제 9 조, 제 16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 허가등에 관한 사항
2. 제 10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3.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구역의 조정
4.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기준액의 통보

별표 양식중 별표 명칭인 "별표 제 8 호서식"을 "별표제 2 호"로 한다. 별표 제 1 호, 별지제 1 호서식(전면), 별지제 5 호서식, 별지제 6 호서식 및 별지제 9 호서식(전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11 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시공업자는 공포일로부터 3 월 이내에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별표제 1 호				
시 공 영 업 허 가 기 준 표				
기술능력	법 인		개 인	
		시공기술자 2인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시공기술자 1인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본금	불입자본금 5,000,000 원 이상		재산평가액 2,000,000 원 이상	
시설	1. 사무실 3명 이상 2. 창고 3명 이상			
공 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천 공 기		조	1
	오 스 다	1/2 - 1 인치	조	1
	"	1/2 - 2 인치	조	1
	파 이 프 렌 치	6 - 10 인치	개	3
	"	12 - 18 인치	개	2
	"	24 - 36 인치	개	1
	연 (鎚) 집 합 도 구		조	1
	해 빙 기	5K - 17.5K - 1	조	1
	절 단 기	13 - 50 미터	개	1
	착 암 기		대	1
	배 수 펌 프		대	1

별지제 1호서식 (전명)		처리기간	
상수도시공영업허가 (갱신) 신청서		3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상호	소재지	
자본금 (개인)			
공자본금 (법인)			
불입 자본금 (법인)			
종업원수	현장대리인	명	배판공 명
상수도시공외영업종목			
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기술자격증발행청	
<p>위와같이 귀시 상수도공사 시공업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p> <p>1. 허가신청서</p> <p>2. 이력서</p> <p>3. 신원증명서</p> <p>4. 재산증명서 (법인체, 법인체 등기부등본)</p> <p>5. 공사기구명세서</p> <p>6. 전화청약증명서</p>		<p style="text-align: center;">갱신</p> <p>1. 허가 (갱신) 신청서</p> <p>2. 영업자납세번호증</p> <p>3.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p>	
		<p>신규 5,000원</p> <p>갱신 2,000원</p>	

<별지 제 6 호 서식>	
신 분 중	사 진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p>상기자는 상기 상수도 시공업체의 종업원 (현장관리인, 배관 공)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 ○ 구 청 장 인</p>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6년 1월 14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49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화재예방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거리) ①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로
및 화덕, 조례 제3조 제2항 규
정에 의한 보이라,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로와 조
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조설비의 설치위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외 물품으로부터 보유하여야 할
안전거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조례 제16조 제1호 규정에 의
한 풍로 및 이동식난로의 연로의
성질등에 따라 가연물로부터 보유
하여야 할 안전거리의 기준은 별

표 2가 같다.

제3조 (기구 및 계양망의 충분한
강도) 조례 제15조 제5호 규정
에 의한 풍압 또는 마찰에 대하
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구의 재료

가. 비닐수지 또는 고무를 입힌
전등으로 그 재질이 고르고
기온의 변화등에 의한 변질,
점전기의 발생 또는 대전의
우려가 없는 것.

나. 원단은 가소제, 품질에 의한
착색제로 인한 점착이 없고
거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

다. 두께는 비닐수지에 있어서는
0.1밀리미터 이상, 고무를 입
힌 것에 있어서는 0.25밀리미
터 이상의 것.

라. 확장력 및 신장력은 팽창
또는 압축에 의한 내외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열화
비닐 필름에 있어서는 매 평
방센치미터당 150킬로그램, 고
무를 입힌 것에 있어서는 매
평방센치미터당 270킬로그램 이상인 것

마. 인열강도 (이하 "강도" 라 한다)는 열화
비닐 필름에 있어서는 "에켈멘돌프" 강
도 평방센치미터당 6킬로그램 이상의 것

라. 수소가스를 부과하는 량은 1기압, 섭씨 20도, 24시간, 1평방미터당 5미터 이내의 것.

2. 기구의 구조

가. 계양 또는 계류중 국부적으로 현저하게 의압을 받거나 정전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계양중 현저하게 불안정하거나 회전하지 아니하는 것.

다. 접촉부분은 원단의 강도와 동등 이상일 것.

라. 실 역음자리는 150키로 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것.

3. 계양망동의 재료

가. 마 또는 면 등으로 재질이 크고 변질, 정전기의 발생 또는 대전의 우려가 없는 것.

나. 섬유는 비교적 잘 섬유인 것.

다. 계양망 및 계류망에 사용하는 망사의 굵기는 마에 있어서는 직경이 6밀리미터 이상, 면에 있어서는 7밀리미터 이상의 것.

라. 실 역음망에 사용하는 망사 굵기는 마에 있어서는 직경이 3밀리미터 이상, 면에 있어서는 4밀리미터 이상의 것.

가. 계양망의 절단 하중은 직경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의 기구에 있어서는 240키로그램 이상 직경 2.5미터 미만의 기구에 있어서는 170키로그램 이상의 것.

바. 물 박테리아, 유류, 약품등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사. 건물등 모서리에 마찰하여도 쉽게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

아. 흡습에 의하여 현저하게 굳어지지 아니하는 것.

4. 계양망동의 구조

가. 본실의 수 2이상의 것을 3가닥으로 한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것.

나. 현저하게 변형하거나 지나치게 비틀리지 않는 것.

다. 실역음은 5이상으로 하고 부력 및 풍압에 충분히 견디는것

라. 이음자리는 풍압에 의하여 쉽게 풀어지거나 국부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것.

제 4조 (안전장치) 조례 제 26 조 제 15 호 라 목 및 농조 제 15 호 다 목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p>1. 자동적으로 압력을 정지시키는 장치</p> <p>2. 감압측에 안전발브를 부착한 감압발브</p> <p>3. 안전발브를 겸용하는 경보장치</p> <p>제 5 조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지정) 조 제 26 조 제 16 호 마</p> <p>목 규정에 의한 인화의 우려가 있다</p>	<p>는 위험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인화점이 섭씨 40 도 미만의 위험물</p> <p>2. 인화점이 상의 상태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전 1 호 의의 위험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로 및 화석동 안전거리

설 비 구 분		보 유 거 리		
		상 층 부	추 면	건 면
로 및 화 석 동	사용온도가 800℃이상의것	2.5 미터이상	2.0 미터이상	3.0 미터이상
	사용온도가 300℃이상 800℃미만의것	1.5 미터이상	1.0 미터이상 (개방로에 있어서는 1.5 미터이상	2.0 미터이상
	사용온도가 300℃미만의것	1.5 미터이상	0.5 미터이상 (개방로에 있어서는 1.0 미터이상)	1.0 미터이상
보 이 라	1시간의 소비열량이 2만키 로칼로리 이상의것	1.2 미터이상	0.45 미터이상	1.2 미터이상
	1시간의 소비열량이 2만 키로 칼로리 미만의 것	1.2 미터이상	0.3 미터이상	1.0 미터이상
난로	고정식의 것.	1.5 미터이상	1.0 미터이상	1.5 미터이상
전 조 설 비	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상 의 것.	1.0 미터이상	0.5 미터이상	1.0 미터이상
	내용적이 1입방미터 미만 의 것	0.5 미터이상	0.3 미터이상	0.5 미터이상

○서울특별시고서제 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581 호(71.9.30)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관계도서는 성북구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 5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북구성북동 101-276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성북2동 지내도로 확장공사
- 3. 사업규모 : B=12 m, L=680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5.12 ~ 1976.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

지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1976 년도서울특별시

새출에상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6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 1. 1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회 계 별	예 산 액			
일 반 회 계	104,568,828 천원			
주 택 비 록 별 회 계	21,450,000			
토 지구외 정리 비 록 별 회 계	10,500,000			
하수처리장 비 록 별 회 계	1,850,003			
건설자재생산 비 록 별 회 계	1,432,008			
유로도로 비 록 별 회 계	1,095,000			
시민회관 비 록 별 회 계	3,271,106			
청소 비 록 별 회 계	8,062,454			
재해구호 비 록 별 회 계	72,524			
수도사업 비 록 별 회 계	21,364,058			
지하철운수사업 비 록 별 회 계	5,654,000			
계	177,319,973			
<p>○서울특별시고시제 4 호</p> <p>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73. 가. 시설결정조서</p>	<p>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 1. 9 서울특별시장</p>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천호신시장	강남구천호동422-2의 9필지	8,519㎡ (2,577명)	
<p>※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출장소에 보관</p>				

수용할토지조서

번호	원			수용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성동구용답동 204번지	하천	611	성동구용답동 204번지	하천	73	성동구신당동 57	윤영태	발양
2	성동구용답동 40-5	대	32.6	성동구용답동 40-5	대	2.4	동대문구보문동7가68	정진방	"
3	성동구용답동 40-4	대	28.3	성동구용답동 40-4	대	1.8	동대문구보문동7가68	정진방	"
4	성동구용답동 40-31	대	32.6	성동구용답동 40-3	대	5.7	동대문구보문동7가68	정진방	"
5	성동구용답동 36-16	대	28.7	성동구용답동 36-16	대	9.3	서대문구아현동326-28	박보영	"
6	성동구용답동 39-15	대	45.7	성동구용답동 39-15	대	17	서대문구아현동326-28	박보영	"
7	성동구용답동 39-18	대	38.3	성동구용답동 39-18	대	27.1	서대문구아현동326-28	박보영	"
8	성동구용답동 39-17	대	148.3	성동구용답동 39-17	대	8.3	서대문구아현동326-28	박보영	"
9	성동구용답동 37	대	1,066	성동구용답동 37	대	480.6	동대문구용두동205-1	정선애	"
10	성동구용답동 28	대	2,216.1	성동구용답동 28	대	1,444.1	동대문구전농동 454	현동윤의 5인	"
11	성동구용답동 27	유지	6,466.8	성동구용답동 27	유지	2,766	성동구마정동 473	정한용	"
12	성동구군자동 205-459	전	289	성동구군자동 205-459	전	233	성동구행당동 207-1	김오동	"
13	성동구군자동 205-122	담	280	성동구군자동 205-122	담	87	성동구행당동 207-1	김오동	"
14	성동구군자동 205-458	담	33	성동구군자동 205-458	담	12	성동구행당동 207-1	김오동	"
15	성동구군자동 205-121	담	352	성동구군자동 205-121	담	34	성동구자양동 225	지춘순	"

29-22

536호

스

보

1976.1.14

0239

번호	원			용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6	성동구송정동 74-205	답	780	성동구송정동 74-205	답	347	동대문구전농동 136	김봉태 발송
17	성동구송정동 74-193	답	153	성동구송정동 74-193	답	40	서대문구신영동 105-20	배성숙 "
18	성동구송정동 74-177	답	364	성동구송정동 74-177	답	364	성동구사근동 146	김운산 "
19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512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72	서대문구신영동 105-20	배성숙 "
20	성동구송정동 74-60	답	1,291	성동구송정동 74-60	답	1,291	성동구중곡동 360	정종수 "
21	성동구송정동 74-29	답	304	성동구송정동 74-29	답	304	성동구화양동 37	김덕호 "
22	성동구송정동 74-37	답	10	성동구송정동 74-37	답	10	서대문구신영동 105-20	배성숙 "
23	성동구송정동 74-38	답	42	성동구송정동 74-38	답	42	서대문구신영동 105-20	배성숙 "
24	성동구송정동 74-39	답	23	성동구송정동 74-39	답	23	서대문구신영동 105-20	배성숙 "
25	성동구송정동 74-191	답	137	성동구송정동 74-191	답	134	성동구행당동 299	이삼용 "
26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512	성동구송정동 74-190	답	3	서대문구신영동 299	배성숙 "
27	성동구송정동 74-198	답	263	성동구송정동 74-198	답	25	서대문구신영동 299	배성숙 "
28	성동구송정동 74-199	답	171	성동구송정동 74-199	답	127	서대문구신영동 299	배성숙 "
29	성동구송정동 74-207	답	205	성동구송정동 74-207	답	205	성동구행당동 299	이삼용 "
30	성동구송정동 74-206	답	306	성동구송정동 74-206	답	306	동대문구전농동 136	김봉태 "
31	성동구송정동 74-25	답	219	성동구송정동 74-25	답	178	성동구자양동 225	지훈순 "
	계		16,962.4			8,074.3		

제 536 호

지

보

1976.1.14 29-23

○ 서울특별시고시제 5 호

도시계획사업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08 호 (75.6.23)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도시고속철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4.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공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여 각각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가름한다.

1976.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동구군자동205. 송정동 74. 담심리동 (현용담뿔) 516 일대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공사
3. 사업규모 : 가. 용역 및 성토

나. 제도설비.

다. 차량검수공장 및 부대설비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준공 : 81.12.31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사
7.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사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중 상호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 공고한다.

1976. 1. .

서울특별시장

현 지 정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
437	해태염직 공업사	박형재	성동구성수동 2가 315-68	염색 가공	437	기영산업 주식회사	박형재	성동구성수동 2가 315-68	염색 가공

※ 상호변경

<p>◎ 중 구 공 고 제 1 호</p> <p>공인 개작 공 고</p> <p>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 조의 규 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작하였기 동조례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 정에</p>		<p>의하여 이에 공 고 한다.</p> <p>1976. 1. 6</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p> <p>1. 개작 사용 년월일 1976. 1. 6</p> <p>2. 공인 개작 인 영</p>	
<p>신 당 제 1 등 광 인</p>		<p>신 당 제 2 등 계 인</p>	
(가)	(신)	(가)	(신)
			
<p>◎ 은 명 출 장 소 공 고 제 1 호</p> <p>공인 개작 공 고</p> <p>1976 년 2월 1 일부 터 은 명 출 장 소 장 직 인 을 관 인 규 정 제 2 조 4 항 및 제 8 조</p>		<p>1 항의 규 정에 의 하여 경 신 사 용 함 을 공 고 함.</p> <p>1976. 1. 8</p> <p>은 명 출 장 소 장</p>	
<p>은 명 출 장 소 장의 직 인 및 계 인 인 영</p>			
직 인		계 인	

사 령

◎ 1976.1.7 자

용 산 구 지방토목 김 봉 식
기 관 보 사 무 관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평안구보전소 지방행정 강 순 무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주먹별정과 지방행정 이 돈 화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연 로 과 지방행정 점 호 진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자(발령제 493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성동구보전소 지방행정 민 용 식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기관리 지방행정 조 병 호
사 업 소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중부별원 지방행정 홍 연 표
사 무 관 사 무 관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9.2자(발령제 512호)

징계처분(정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도로보수과 도목기과 김 재 석
국가공무원법제 78조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에 처함.

◎ 1976.1.8 자

시 민 과 지방행정 유 상 철
주 사 보 사 무 관 사 무 관

위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김 호 길
서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도봉구 지방행정 진 태 흥
주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김 정 치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 박 치 권
서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 강 길 웅
서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서기관 이 진 송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관악구 지방서기관 안 병 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1976. 1. 12 자

도로보수과 지방토목 명 기 영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대문보건소 지방외무 손 정 신
기확시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심 희 순
기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박 제 갑
기 기 원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관·악구 지방토목 홍 연 구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수도관리 지방토목 강 순 천
사 업 소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하수과 지방토목 이 조 영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2 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업무과 지방행정 문병 규
사 무 관

동대문근무불 명함.

총무과 지방행정 김 현 송
사 무 관

공무원교육원교수부근무불 명함

경북대구지방행정도명정
총무국사무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수도국업무과에 산계장에 보함.

서대문보건의 지방간호
기원보시보 임인숙
75.12.16자 발령 834 호신규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본인포기)

경기도이천군 지방보건
보건의소 기원보시보 반영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초임호봉을 급함.

종로구근무불 명함.

기전과 지방전기
기원보 홍남희
원계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6.1.14 자

시정개발 지방행정
담당관 주사보 임역빈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구 지방행정
서기 지광남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 최성원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 김기홍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갑수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교판석
지방공무원법제 6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1976.1.15 자

도봉구 지방외무
보건의소장 거 김진외
서대문구보건의소장에 임함.

경기도 지방외무
서기 이용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외무기과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의소장직무대리를 명함.

정 정

<p>조례 999 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 별표 1 중 "외무직공무원조정수당지급 구분"을 "외무직공무원조정수당지급 구분"으로 정정함.</p> <p>1976. 1. 14</p> <p>서울특별시장</p> <p>시보제 535 호(75.12.31) 7 페이지 조례 1004 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p>	<p>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별표중 " 19. 공사준공기술용역및 공사도급 회사보증금보관확인원"을 " 19. 공 사준공기술용역및 공사도급실적증명" 으로 " 42. 국제결혼신고"를 " 42. 국제결혼증명"으로 각각 정정함.</p> <p>1976. 1. 14</p> <p>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p>	